

#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구역경계조정(안) 심사보고서

94. 4. 22

내무위원회

## 1. 심사내역

### 가. 조정규모

- 대상지역 : 성서택지지구 1단계(3개법정동)
- 세대 및 인구 : 없음.
- 면 적 : 186필지 209,647㎡

### 나. 세부조정내역(94. 3. 31 현재)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조 정 사 유
<input type="checkbox"/> 대상지역① : 신당동 (성서3동) ○ 지번 및 필지수 : 신당동 1번지와 178번지 ○ 세대 및 인구 : 없음 ○ 면 적 : 197,677㎡	<input type="checkbox"/> 이곡동 (성서3동)	○ 신당동과 이곡동간의 현재 경계가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 중앙으로 관통하고 있으므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주민편의 증진
<input type="checkbox"/> 대상지역② : 이곡동(성서3동) ○ 지번및필지수 : 이곡동 699번지의 6필지 ○ 세대 및 인구 : 없음. ○ 면 적 : 11,970㎡	<input type="checkbox"/> 용산동 (성서1동)	○ 신당동과 이곡동간의 현재 경계가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 중앙으로 관통하고 있으므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하여 주민편의 증진

## 2.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4. 19
- 다. 회부일자 : 94. 4. 19
- 라. 상정일자 : 94. 4. 21

## 3. 제안설명요지

### 가. 조정사유

성서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주민입주전에 조정하여 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며 성서택지지구 개발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1단계 12,000호 2단계 18,400호 총 30,400호 건립계획으로 1단계 시행지역은 금년말에 완료되고 2단계 시행지역은 96년말에 개발완료할 예정으로

- ▷ 특히 1단계 시행지역은 금년 8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지 않으면
- ▷ 5개 아파트단지 4,360세대가 2개의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분리되는등 주민입주시에 많은 불편과 혼돈이 예상되며
- ▷ 따라서 택지 개발시 조성된 신설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성서1,3동의 동장 및 구의원과의 협의결과 경계조정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일치를 보았습.

### 나. 주요골자

행정구역 경계조정대상은 3개 법정(2개 행정동)으로 현재 거주자는 없으며 면적은 186필지 209,647평방미터로써

- ▷ 첫째, 현재 신당동의 대백, 창신, 한라, 청구, 영남과 동서, 서한, 보성아파트 일부지역과 와룡국민학교, 와룡중학교, 근린공원지역 및 수도시설 일부지역인 179필지 197,677평방미터를 신당동에서 이곡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고
- ▷ 둘째, 현재 이곡동 지역인 협화, 동화, 평광아파트 일부지역 7필지 11,970평방미터를 이곡동(성서3동)에서 용산동(성서1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코자 함.
- ▷ 이와 같이 성서 택지 1단계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면

- 성서 3동의 면적은 13.17km에서 0.012km가 감소한 13.159km가 되고
- 성서1동의 면적은 5.749km에서 0.012km가 증가한 5.761km 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검토내용〉

- 가. 법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수렴
- 나. 성서택지지구 1단계 지역은 금년 8월부터 주민 입주가 예상되어 현재 법정 동 및 행정 동경계가 택지 개발로 인해 아파트 건물 증상으로 통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 입주 전에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함.
- 다. 경계 조정 대상지역은 2개 행정동과 3개 법정동으로서 성서3동 법정동간 경계 신당동 1번지의 178필지 면적 197,677평방미터를 이곡동으로 편입하고 성서3동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 이곡동 699번지의 6필지 면적 11,970평방미터를 성서1동 용산동으로 편입 조성되는 사항임.

##### 〈검토의견〉

- 가. 택지개발로 인해 법정동간 경계가 신축되는 아파트 건물 증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입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성서3동 신당동 1번지의 178필지를 이곡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붙임 도면과 같이 도로를 경계로 조정함으로 주민 입주후 불편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나. 성서3동 이곡동도 택지개발로 인해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가 아파트 단지내로 통과하게 됨으로 입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며 성서3동 이곡동 699번지의 6필지를 성서1동 용산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 향후 주민 입주시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고 판단되나 상기 가 및 나항에 대하여 해당동 위원님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임.

#### 5. 토론요지

택지 개발지구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주민입주전 완료하여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나 행정구역 경계 조정계획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고 참조하여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바람. 특히 치안문제와 교육여건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기관과도 충분한 협의가 있는 후 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1.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의견서 1부.

2. 행정구역경계조정(안) 1부.

## 성서택지지구 1단계 지역 행정구역 경계조정 (안) 의견서

### 1. 대상지역 : 신당동(성서3동) ⇨ 이곡동(성서3동)

- 의견 - 성서택지지구가 개발됨으로써 현재의 신당동과 이곡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현 신당동지역인 대백, 창신, 한라, 청구, 영남, 동서, 서한아파트 일부지역과 와룡국민학교, 와룡중학교, 근린공원 및 수도시설일부 지역을 주민입주 전에 신당동에서 이곡동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함이 주민입주 후 불편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함.

### 2. 대상지역 : 이곡동(성서3동) ⇨ 용산동(성서1동)

- 의견 - 현재의 이곡동과 용산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여 이곡동 지역인 협화동화, 평광아파트 일부지역을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이곡동에서 용산동으로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함이 주민입주시 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됨.

위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안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불합리한 동간의 경계를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조정하여 향후 주민입주시 불편과 혼돈을 방지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94. 4. 26 제24회(임시회) 본회의에 부의함.